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35

발의연월일: 2020. 10. 23.

발 의 자: 박홍근・양향자・정일영

조승래 · 김수흥 · 임호선

한정애 · 천준호 · 기동민

김병기 · 우원식 · 허 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해 디지털·그린 경제 실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에 집중 투자가 필요 한 상황임. 또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·흡수하고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디지털·그린 경제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특정사회기 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까 지 9%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(안 제26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

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.

다.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6조의2(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)
① 거주자가 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(이하 이 조에서 "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 자기구"라 한다)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

-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일 것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 이 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
- 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 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- ② 제1항의 조세특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(이하이 조에서 "전용계좌"라 한다)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- 1.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입할 것

- 2. 납입한도가 2억원 이하일 것
- 3.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에만 투자할 것 ③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건, 투자금액의 계산방법, 전용계좌의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6조의2(특정사회기반시설 집
	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
	특례) ① 거주자가 제2항에 따
	른 전용계좌를 통하여 다음 각
	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
	자기구(이하 이 조에서 "특정사
	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"라
	한다)로부터 2022년 12월 31일
	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「소
	득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
	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
	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
	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
	아니한다.
	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
	집합투자기구일 것
	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
	상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
	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
	정하는 비율 이상을 투자할
	<u> </u>
	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
	관한 법률」 제9조제19항에
	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

당하지 아니할 것

- ② 제1항의 조세특례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(이하 이 조에서 "전용계좌"라한다)를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- 1. 1명당 1개의 전용계좌만 가 <u>입할 것</u>
- 2. 납입한도가 2억원 이하일 것
- 3.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 기구의 「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 에만 투자할 것
- ③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 기구 및 전용계좌의 구체적 요 건, 투자금액의 계산방법, 전용 계좌의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